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2805     |
| 의 퇴 인 | 염태영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11.17. |
| 추계번호  | 25B4924     |

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2조<br>(건설공사의 안전<br>관리) |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<br>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<br>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<br>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<br>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함(제7<br>항 신설)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·이용·폐기의 기<br>간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<br>(제8항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<br>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<br>따름(제9항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2조<br>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<br>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<sup>1)</sup>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, 수집된 영상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하도록 하여,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시공과정 영상촬영에 필요한 장비·인력 비용과 촬영 자료의 보관·관리 비용이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런데 개정안은 시공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이 의무화되는 건설공사의 범위, 촬영방법 및 촬영 장비의 기준, 영상정보의 보관·이용·폐기의 기간·방법·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영상촬영 장비 구매비용, 촬영인력 비용, 영상정보 저장을 위한 서버·클라우드 등 저장체계 구축·관리 비용 등 기초자료가 현시점에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종시설물: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- 가. 고속철도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
- 나.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,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
- 다.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
- 라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
- 마.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- 바.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
- 사. 광역상수도, 공업용수도,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김신애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